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안)

서울특별시(도시빛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미디어파사드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고 서울시의 좋은빛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조명계획수립 기준(제3조 관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미디어파사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영상콘텐츠에 관한 최소기준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2조제4호에 의해 정의된 미디어파사드에 해당하는 시설 및 영상콘텐츠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적용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과 같다.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KS)

전기설비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전자파 적합인증

구내통신설비설치기준

제3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디어파사드”라 함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을 말한다.

2 “LED형 미디어파사드”라 함은 LED를 표시소자로 사용하여 영상표출부를 구성하는 유형의 미디어파사드를 말한다.

- 3 “프로젝션형 미디어파사드”라 함은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여 건축물 등의 표면을 영상 표출부로 구성하는 유형의 미디어파사드를 말한다.
- 4 “표시소자”라 함은 LED형 미디어파사드에서 백색광 또는 컬러의 영상 표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적색, 녹색, 청색 등의 LED 소자를 말한다.
- 5 “표시소자간 거리”라 함은 LED를 표시소자로 사용하는 영상표출 장치의 표시 소자간의 거리이다.
- 6 “표시모듈”이라 함은 영상표출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표시소자를 조합하여 제작된 단위구성요소를 말한다.
- 7 “영상표출부”라 함은 LED형 미디어파사드의 경우 영상을 표출하는 광원을 포함하는 발광표면을 지칭하며, 프로젝션형 미디어파사드의 경우는 해당 영상이 도달하는 범위 전체를 말한다.
- 8 “최소감상거리”라 함은 미디어파사드에서 표출되는 영상의 화질을 만족스럽게 감상하기 위해서 최소한 확보해야하는 권장 시청거리로서, 영상을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해서 감상하게 되면 개별 표시소자가 보이게 되어 화질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9 “광고”라 함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10 “영상콘텐츠”라 함은 광고를 제외한 미디어파사드에서 표출되는 일련의 주제와 이야기가 담긴 동영상물을 말한다.

제4조(기본 원칙)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함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빛공해 방지) 미디어파사드 영상표출부로부터 방사된 빛이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제시된 최대휘도 및 평균휘도를 준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눈부심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에너지 절감) 과도하고 현란한 영상표출을 자제하고, 고효율 표시소자를 사용하며, 영상 표출 시간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도록 한다.
- 3 (주변 환경과의 조화)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된 건축물과 그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진 야간경관을 조성한다.

제2장 일반 기준

제5조(미디어파사드 시설 기준) 미디어파사드 시설의 계획과 설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준수하여야 한다.

1 미디어파사드를 구성하는 발광표면의 휘도는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빛방사허용기준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측정기준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준공업		상업지역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0이하		150이하	200이하	250이하	cd/m ²
			최대값	200이하	600이하	1800이하	2400이하	3000이하	

2 미디어파사드 설치허용 구역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조명 계획수립 기준(제3조 관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1]

3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설치하는 미디어파사드는 좋은빛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며 「인공조명에의한 빛공해방지법」 제12조 ①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4 미디어파사드는 전기 및 통신 기술기준 및 관련법령, 제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기 전에 표시소자와 표시모듈의 사양을 확인하고 휘도 계산 또는 사전측정을 수행하여 해당 지역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미디어파사드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좋은 빛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7 미디어파사드와 전광판은 동일한 건축물의 입면에 설치할 수 없다. 단,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특구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미디어파사드 특화거리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경우는 좋은빛심의위원회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별표2]

8 미디어파사드 영상표출부의 구성은 영상의 표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9 미디어파사드의 영상표출부는 건축물의 구조와 형상을 강조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설치되어야 하며 LED 스크린의 단순 부착 방식은 지양하여야 한다.

10 미디어파사드 영상표출부는 해당 영상이 최적으로 조망될 수 있는 지점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 11 미디어파사드의 미운영 시간대에 영상표출부가 검은색 면으로 방치되고 표시소자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주간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2 미디어파사드의 영상표출부는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되는 건물 재실자의 외부 조망이 가능한 방식을 권장하며 야간시간대 건축물 내부 조명과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한다.
- 13 미디어파사드의 영상표출부에서 발생된 빛이 건축물의 내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6조(미디어파사드 설비 기준) 미디어파사드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상표출부를 구성하는 표시 소자는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의 내용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영상콘텐츠에 적합한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표시소자의 수와 표시소자간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2 빛공해 방지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미디어파사드의 영상표출부의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미디어파사드의 영상표출부 하단의 최소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미디어파사드 설치 대상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좋은빛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미디어파사드 영상과 신호등의 점멸신호가 중첩되어 표시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와 높이를 정하여야 한다.[별표3]
- 5 미디어파사드의 영상 표출부의 크기는 표시소자가 설치된 부분의 가로와 세로의 크기(m) 또는 면적(m²)으로 표시한다. [별표4]
- 6 미디어파사드 영상 표출부의 해상도는 단위 면적(1m²)당 표시 소자의 수량으로 표시하며, 표시소자 사이의 거리(mm)를 표시하여야 한다.
- 7 운영자는 영상표출부로부터 관람자 사이의 최소감상거리를 표시하여 해당 영상콘텐츠가 요구하는 최적의 감상거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 8 프로젝션형 미디어파사드의 기기 고정을 위한 장치는 구조적 안전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미디어파사드 휘도 측정 기준) 미디어파사드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휘도 측정이 가능한 휘도계를 사용하여 빗공해공정시험기준을 준용하여 측정한다.

제8조(유지 관리) 미디어파사드로 인한 빗공해 방지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지 관리할 것을 권장한다.

- 1 미디어파사드 영상 표출을 위한 모든 장치는 열과 진동, 먼지, 부식 등에 의한 손상 가능성에 대비하여 충분한 설비를 갖추어야한다.
- 2 표시소자 또는 표시모듈 등의 결합에 의해 영상표출부의 휘도와 색상이 균일하게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영상표출부의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한다.
- 3 미디어파사드 시설과 관련된 장치의 전기적 배선, 단자, 스위치 등의 체결 상태와 파손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누전이나 합선 등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해야한다.

제3장 영상콘텐츠 기준

제9조(영상콘텐츠의 공공성) 미디어파사드의 영상콘텐츠는 시민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하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영상의 노출이 아닌 공공을 위한 문화적 요소로서 가치를 갖도록 제작되어야한다.

제10조(영상콘텐츠의 심의대상) 미디어파사드에서 광고의 표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술성을 갖춘 작품에 한하여 표출 가능하다. 좋은빛위원회의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작품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시간의 변화에 따른 도형 및 문자의 표출 및 형태의 변화를 표시하는 영상 콘텐츠
- 2 사진이나 작화로 구성된 영상 콘텐츠
- 3 입체영상 기술 등으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
- 4 국가적 행사 및 이벤트 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영상 콘텐츠
- 5 기타 좋은빛위원회가 정하는 영상 콘텐츠

제11조(영상콘텐츠 심의 기준) 좋은빛위원회는 영상콘텐츠 심의시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

상콘텐츠에 대한 표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내용이 운전자나 보행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영상 콘텐츠
- 2 특정 상품과 기업, 개인, 단체 등을 연상시키는 색상과 도형 등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영상콘텐츠. 단, 문화적 가치가 높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협찬사 등의 표시를 검토할 수 있다.
- 3 특정 상품과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호의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캠페인 영상 콘텐츠
- 4 기타 공익적 목적에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상 콘텐츠

제12조(영상콘텐츠 심의시 제출 도서) 좋은빛위원회에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신청서 1부.
- 2 심의용 도서
 - 가)사업개요 및 심의 상정 사유서
 - 나)추진경위,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필요 시)
 - 다)빛방사허용기준 검토 결과
 - 라)주·야간 주변 환경 분석 결과
 - 마)조도 및 휘도 시뮬레이션 결과
 - 바)조도·휘도·색온도 등 자료
 - 사)조명기구 배치도 및 성능사양서아)조명시설 운영계획 등(재상정 안건의 경우 종전 심의에서의 의결사항 및 보완내용 비교하여 명기한다.)
 - 자)영상콘텐츠를 표출하려는 건축물 및 주변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 3 LED형 미디어파사드의 경우 영상표출부의 시설 사양
- 4 최종 완성된 영상콘텐츠의 동영상 결과물
- 5 영상콘텐츠 저작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별표1] 미디어파사드 설치 금지 구역 및 허용 구역(제5조2 관련)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설치 가능 구역

가)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속하며 대로(25m) 이상 도로에 면하는 필지

나)대로에 면하지 않더라도 ‘명동·남대문·북창동 관광특구’,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종로·청계 관광특구’, ‘강남 마이스특구’, ‘잠실특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등은 설치 가능 (단, 패션특구는 지정기간에 한해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운영)

다)서울시 및 자치구가 추진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특화거리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경우

라)기타 행사, 축제 등 수립된 계획 또는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수립된 계획

[별표2] 미디어파사드와 전광판 동일 입면 설치금지(제5조7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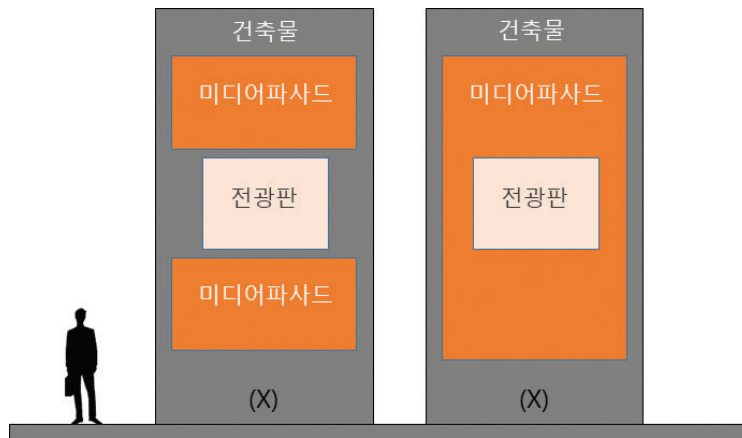


그림 128 미디어파사드와 전광판의 동일 입면 설치의 경우

[별표3] 미디어파사드 영상과 신호등 신호가 중첩 표시되는 지역 (제6조4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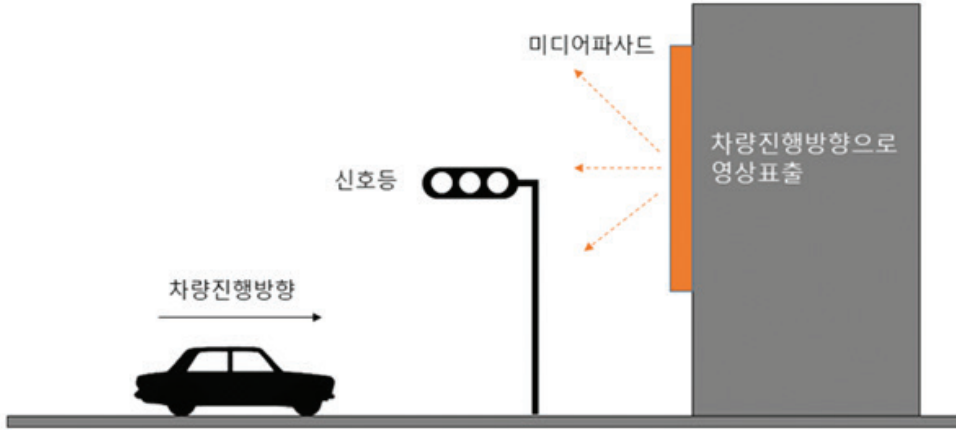


그림 129 미디어파사드 영상과 신호등 신호의 중첩 표시

[별표4] 미디어파사드의 크기 표시(제6조5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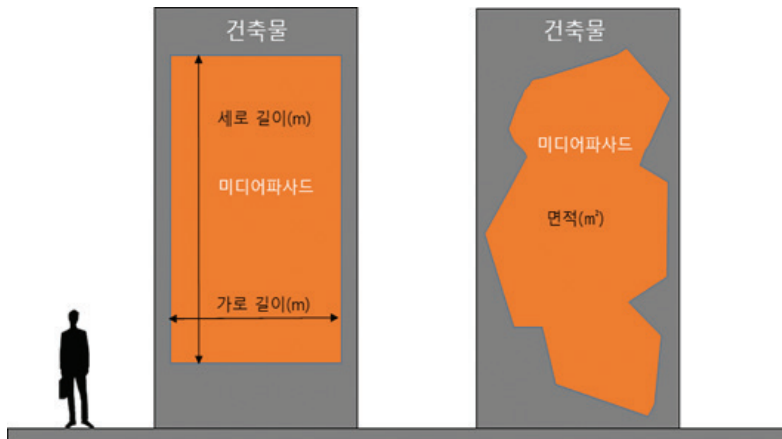


그림 130 정형 미디어파사드(좌)와 비정형 미디어파사드(우)